

#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

마운틴 자산운용 (주)

## 제 1 편 총칙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) 제 58 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마운틴자산운용(주) (이하 '회사')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- ① 운용수수료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
- ② 성과수수료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(법 제 86 조, 동법 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-65 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가능)

### 제 3 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을 일관되게 고려하여 책정 되어야 한다.

### 제 4 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

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, 포트폴리오의 규모, 요구 되어지는 서비스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투자자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
### 제 5 조 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 47 조 1 항 및 동법 시행령 53 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### 제 6 조 (공시)

회사는 법 제 58 조 1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### 제 7 조 (협회에 대한 통보)

회사는 법 제 58 조 3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제 8 조 (기준의 제정 및 개정)

이 기준은 경영진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## 부 칙

### 제 1 조 (시행일)

이 기준은 2017 년 1 월 3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 2 조 (경과조치)

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